

# 「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9. 2.
- 회부일자 : 2024. 9. 5.
- 상정일자 : 2024. 9. 5.

## 2. 제안이유

- 미래산업의 변화에 따라 드론산업도 발전할 것이므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-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 자체계획 수립(안 제5조)
-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(안 제6조)
-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노력(안 제7조)
- 드론 체험 및 교육 실시(안 제8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‘지자체는 드론산업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’ 고 규정하고 있음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미래 유망산업인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5조(자체계획 수립)에서 부문별 추진전략, 자원조달 방안 등이 담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.
- 안 제6조(사업 등)에서 우리 군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정하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### < 드론산업 육성사업 >

1.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
2.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
3.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
4. 드론 사용 사업자 창업·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
5. 드론 관련 지역행사와 대회 지원
6.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
7.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
8. 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안 제10조(재정지원)에서는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신성장 동력사업인 드론산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지역의 산업 및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활용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